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3.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4. 1.부터 5. 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출통제,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2025. 1. 21. 공포되었고, 같은 해 7.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영**')은 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 (개정안 영 제7조의2)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orea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이하 '**KEIT**')를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이하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에 관하여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개정안 제7조 제6항), 개정안 영 제7조의2를 통해 KEIT를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에 관한

Related Areas

기술 수출입 통제
대응센터

IP & Technology 융합

Contact

임형주 변호사
02-528-5274
hjlim@yulchon.com

손승우 고문
02-528-5349
swson@yulchon.com

조세윤 변리사
02-528-5704
sycho@yulchon.com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술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KEIT를 상설기관인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함으로써,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전문적·체계적인 기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 대상 및 절차,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 및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마련 (개정안 영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기업등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법 제9조의2),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이행을 위한 직권 판정 신청 통지 제도의 요건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시행령 개정안은 (1)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 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 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영 제13조의2).

또한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 변경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등록증 및 등록말소 제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개정안 영 제13조의3, 제13조의4).

그 외에도 본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수출 심사 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영 제13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4항).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간 단축을 유도,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 (개정안 영 제16조의2)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수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의 승인 및 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11조 제11항 및 제12항).

이에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수출절차의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1)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 수출하는 경우, (2) 자회사 또는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 (3)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4) 외국 정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우, (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실상 동일 기술의 반복 수출, 소송 대응을 위한 경우 등 신속한 수출한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또는 신고로 인하여 수출이 지체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수출을 통한 사업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개정안 영 제18조의 8 및 별표 2)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 등을 고려하여 1일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11조의3). 이에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액수를 구체화하였는데, (1)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으로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법 제11조의2 제8항)와 불법행위(미승인·부정승인 등)로 인한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법 제11조의2 제10항)를 구분하고, (2) 인수합병 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되 이행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인수합병의 금액	1일당 부과금액
1.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에서 정한 조치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억 원 이하	400만 원
	1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600만 원
	1조 원 초과	800만 원
1.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에서 정한 조치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억 원 이하	600만 원
	1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800만 원
	1조 원 초과	1,000만 원

이를 통해 불법적인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차단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진행된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신속한 원상회복을 도모하여 기술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기타 개정 사항

이외에도 본 시행령 개정안은, i)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횡수별 부과기준 등을 하였고(영 별표1), ii)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영 제20조제2항) iii)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였고(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iv)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실시”를 “1년마다 실시”로 변경함),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v)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3항).

2. 시사점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 및 보유기관 등록 등에 대한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를 규정하여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기업등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만 국가핵심기술 대상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어, 국가적 중요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청이 없는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본 시행령 개정안은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한 직권 판정 신청 통지 제도의 요건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에서의 판정 통지 대상을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유출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데, 이를 통하여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한 불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을 방지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불법적인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기술유출의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보다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인수합병의 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 액수를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국가핵심기술 등록제와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하고, 심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수출 승인 면제 및 간소화 사유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등으로서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와 관련한 직권 판정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 등으로서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판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안보센터로 지정된 KEIT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촌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기술안보와 관련된 상황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수출입 통제 대응센터(바로가기)**를 출범하였습니다. 울촌 기술 수출입 통제 대응센터는 기술안보, 수출통제(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인수 합병, 무역위원회 및 세관 수출입 통제 등)와 관련하여 각종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통상 및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초로, 정부 규제 당국과 컨택이 가능한 전문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이 원팀을 이뤄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문 및 대응책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